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254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2
2.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정부안 등) · 7

Ⅰ. 개요

1.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25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영대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4. 30.

(3) 회 부 일 : 2025. 5.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와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 분야는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로 어촌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어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농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9조의3,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조의3)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거나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일정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이병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2029년 12월 31일(박성훈의원안) - 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 2035년 12월 31일(신영대의원안)

*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신영대의원안 2025. 4. 30. 발의(의안번호 10254), 이병진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추경호의원안 2025. 8. 6. 발의(의안번호 12018), 박성훈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12308),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12789),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제12653호)

□ 7건의 개정안은 2025년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최소 2년에서 최장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 서영교의원안은 2027년 말(2년 연장)로, 이병진의원안·추경호의원안과 정부안은 2028년 말(3년 연장)로, 박성훈의원안은 2029년 말(4년 연장)로, 윤준병의원안은 2030년 말(5년 연장)로, 신영대의원안은 2035년 말(10년 연장)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3[1]에서는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양식업 등 직접 어업에 사용[2]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3]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이하 이 조에서 "양식등"이라 한다)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등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양식등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함.

각 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동 조세특례의 감면실적은 2024년 24억원이고, 20245은 약 11억원, 2026년은 약 12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음.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실적 및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
어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24	25	24	11	12

* 2025년과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각 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참고로, 2024년 양식어업가구는 1만 1,276호로 2019년 대비 80.3%, 2024년 양식어가인구는 2만 5,024명으로 2019년 대비 71.2%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9-2024년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 현황]

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어업가구 (호)		50,909	43,149	43,327	42,536	41,775	40,890
어가인구 (명)		113,898	97,062	93,798	90,805	87,115	83,963
	양식어업가구(호)	15,292	10,335	11,228	11,174	10,938	11,276
	양식어가인구(명)	35,136	25,205	26,456	25,829	24,337	25,024

* 자료: 통계청(농림어업조사 중 「어업형태별 어가, 어가인구」)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이 있음.

첫째, 동 조세특례는 육상 양식어업인이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

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지원과 농업인과의 형평성 제고, 어촌의 고령화 방지 및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을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음.

또한, 어업용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양식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필요할 여지가 있음.

둘째, 동 조세특례와는 달리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4] 및 자경산지 양도세 감면[5]의 경우에는 별도의 일몰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조세특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통상 2년에서 3년의 일몰 규정을 두어 적용기한을 한정하도록 하는데, 이는 한시적 지원을 통해 조세특례의 남용을 막고, 정책효과 및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어업 산업구조의 특수성과 변화 가능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음

2018년 1월 1일부터(2017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동 조세특례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2~3년 단위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특

---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례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참고로 지난 2022년 정기회에서는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 바 있음.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8

2.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 (정부안 등)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5, 제89조의3)

○ 대상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 등

○ 대상소득: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의 이자·배당소득

○ 한도
- 출자금: 1명당 2,000만원
- 예탁금: 1명당 3,000만원

○ 특례내용 및 적용기한
<table><tr><th>소득발생 기간</th><th>'25.12.31. 까지</th><th>'26.1.1.~ '26.12.31.</th><th>'27.1.1. 부터</th></tr><tr><td>감면 내용</td><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table></td><td>□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 대상기관: (현행과 같음)

○ 대상소득: (현행과 같음)

○ 한도
- 출자금: (현행과 같음)
- 예탁금: 1명당 3,000만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은 5,000만원(윤영석의원안)

① 의원발의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분리과세 기간도 순차적으로 연장)
○ 출자금
- 2027년 12월 31일: 서영교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 이만희·주철현·김영진·이양수·이병진·송옥주·추경호·최은석·윤영석의원안
- 2029년 12월 31일: 박성훈·김선교의원안
- 2030년 12월 31일: 임오경·서삼석·박희승·박상웅·임호선·정희용의원안
- 2031년 12월 31일: 서천호의원안
- 2032년 12월 31일: 조인철의원안
- 2035년 12월 31일: 신영대의원안</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td><td>○ 예탁금
- 2027년 12월 31일: 김주영·서영교 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 이만희·주철현·김영진·이양수·이병진·송옥주·추경호 최은석·윤영석·임이자의원안
- 2029년 12월 31일: 박성훈·김선교 의원안
- 2030년 12월 31일: 임오경·윤준병·서삼석·박희승·박상웅·임호선·정희용 의원안
- 2031년 12월 31일: 서천호의원안
- 2035년 12월 31일: 신영대의원안</td></tr>
<tr><td></td><td>② 정부안: 가입자 요건에 따라, 조합원, 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그 밖의 가입자는 저율 분리과세
- 농·어·임업인 조합원 또는 저소득자(2024년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table><tr><th>출자일
가입일</th><th>’28.12.31.
까지</th><th>’29.1.1.~
’29.12.31.</th><th>’30.1.1.
부터</th></tr><tr><td>감면
내용</td><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table>- 그 밖의 가입자
<table><tr><th>출자일
가입일</th><th>’25.12.31.
까지</th><th>’26.1.1.~
’26.12.31.</th><th>’27.1.1.
부터</th></tr><tr><td>감면
내용</td><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table></td></tr>
<tr><td>□ 저축지원 과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제91조의24)
○ 대상: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도약계좌 등</td><td>□ 특례 적용 대상에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추가(정부안)
○ 대상: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추가</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 기준연도 특례: - 원칙: 가입(연장) 신청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 예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등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간주	○ 기준연도 특례: - 원칙: 가입(연장) 신청일 출자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 예외: (현행과 같음)

* 이만희의원안 2024. 11. 29. 발의(의안번호 6035), 이만희의원안 2024. 12. 3. 발의(의안번호 6138)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6), 임오경의원안 2025. 2. 4. 발의(의안번호 7902) 임오경의원안 2025. 2. 5. 발의(의안번호 7903), 김영진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5)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서삼석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23) 조인철의원안 2025. 4. 14. 발의(의안번호 9783), 신영대의원안 2025. 4. 30. 발의(의안번호 10254) 이양수의원안 2025. 6. 5. 발의(의안번호 10673), 이병진의원안 2025. 6. 26. 발의(의안번호 11102), 이병진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박희승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11539) 김주영의원안 2025. 7. 22. 발의(의안번호 11616), 송옥주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3) 추경호의원안 2025. 8. 1. 발의(의안번호 12018), 최은석의원안 2025. 8. 11. 발의(의안번호 12093) 박성훈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12308), 윤영석의원안 2025. 8. 27. 발의(의안번호 12437) 박상웅의원안 2025. 9. 1. 발의(의안번호 12555), 임호선의원안 2025. 9. 2. 발의(의안번호 1262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윤영석의원안 2025. 9. 4. 발의(의안번호 12681)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12789), 서천호의원안 2025. 9. 17. 발의(의안번호 13052) 김선교의원안 2025. 9. 26. 발의(의안번호 13327), 정희용의원안 2025. 9. 29. 발의(의안번호 13341) 임이자의원안 2025. 10. 15. 발의(의안번호 13610)

□ 개정안 등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조합 등[6]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정비하려는 것임.

① 다수 의원발의안은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단순 연장(2년에서 10년까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단, 윤영석의원안은 예탁금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

6)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를 말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제8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제83조의3).

② 정부안은 농·어·임업인 조합원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입자(2024년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농·어·임업인 조합원이 아닌 사람과 소득요건을 미충족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2026년에는 5%의 세율로, 2027년 이후에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현행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이자·배당의 발생시기' 별로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소득기준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조합 등이 가입(출자)시 소득기준 요건을 확인토록 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가입일과 출자일'로 변경하면서 소득요건에 관한 기준 연도 특례규정[7]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농어민·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8]으로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7)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및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및 제91조의22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8) 기획재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현재 조합원등에 대하여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2025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고,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26년에는 5%로 분리과세되고, 2027년 이후에는 9%로 분리과세 됨.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근거조항	적용기간	특례내용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2025. 12. 31	비과세
		2026. 1. 1. ~ 2026. 12. 31	5% 분리과세
		2027. 1. 1. ~	9% 분리과세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	2007. 1. 1 ~ 2025. 12. 31	비과세
		2026. 1. 1. ~ 2026. 12. 31	5% 분리과세
		2027. 1. 1. ~	9% 분리과세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 신설되었으며, 1995년 일몰이 도입된 이후 적용기한이 3회 연장되었다가 2001년에 영구 비과세로 전환되었음. 이후 2007년에 일몰이 재도입되어 2008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등 6차례 연장되었음.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 신설되었으며, 1995년 일몰이 도입된 이후 1996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8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등 11차례 연장되었음.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1976년 도입 당시 200만원에서 1987년 500만원, 1992년 1,000만원, 2024년 2,000만원까지 증액되었고,

예탁금 비과세 한도는 1976년부터 100만원 한도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1978년 500만원, 1987년 1,000만원, 1991년 2,000만원, 2009년 3,000만원까지 증액되었음.

[주요 연혁]

시 기	내 용
1976 ~ 1977년	· 예탁금 100만원, 출자금 200만원 비과세 신설 시행
1978 ~ 1986년	· 예탁금 비과세 한도 인상 : 100만원 → 500만원
1987 ~ 1988년	· 예탁금, 출자금 비과세 한도 인상 및 이용고배당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 - 예탁금 : 500만원 → 1,000만원 - 출자금 : 200만원 → 500만원
1989년 이후	· 준조합원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
1992 ~ 1994년	· 비과세 한도 인상 : - 예탁금 : 1,000만원 → 2,000만원 - 출자금 : 500만원 → 1,000만원
2009 ~ 2012년	· 예탁금 비과세 한도 인상 : 2,000만원 → 3,000만원
2024년 이후	· 출자금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납입한도 증액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납입한도 상향으로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1조 359억원을 기록하였고, 2026년에는 1조 1,480억원 수준의 조세지출이 전망되고 있음.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19년	11,932,600	-	564,175	-	273,591	-	5,233,827	-	7,462,967	-
‘20년	12,692,288	6.37	593,049	5.12	311,860	13.98	5,920,854	13.13	8,366,135	12.1
‘21년	13,618,962	7.30	637,003	7.41	360,607	15.63	6,561,631	10.82	9,599,412	14.7
‘22년	14,220,952	4.40	673,672	5.76	397,170	10.14	6,770,079	3.18	9,837,449	2.50
‘23년	14,503,038	2.00	708,519	5.17	432,643	8.93	6,463,591	△4.53	9,248,811	△6.00
‘24년	15,167,014	4.60	729,962	3.03	470,086	8.65	6,621,311	2.44	9,832,390	6.30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년	56,525,781	-	6,682,477	-	1,698,445	-	29,375,497	-	47,839,104	-
‘20년	53,491,025	△5.4	6,204,701	△7.2	1,737,220	2.3	28,964,829	△1.4	46,848,210	△2.1
‘21년	49,639,937	△7.2	6,351,680	2.4	1,773,703	2.1	29,139,459	0.6	47,899,564	2.2
‘22년	57,413,110	15.7	7,976,482	25.6	2,135,860	20.4	33,409,369	14.6	57,672,907	20.4
‘23년	62,112,233	8.2	8,254,928	3.5	2,353,041	10.2	34,174,623	2.3	57,865,172	0.3
‘24년	63,110,017	1.6	8,200,585	△0.7	2,418,508	2.78	33,960,955	△0.6	56,394,950	△2.5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연도별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실적)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3,760	3,724	7,094	10,359	10,680	11,480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연장, 한도금액의 확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과세특례의 지원대상 중 농어민 등은 기후변화, 감염병 확산, 국제 분쟁과 같은 외생변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노출되는 특성이 있고 이와 같은 구조적 취약성은 이들의 소득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이 있음[9].

농어가 가구당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2010~2020년 사이 평균 62.3% 수준)으로 조사[10]된 바 있고, 2024년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60만원으로,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6,365만원인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8,038만원으로 조사[11]되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상호금융의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제활동 위축과 함께 금융 접근성 저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디지털 전환 확산과

9) 기획재정부,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10) 81p..

10)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p. 161.

11) 통계청,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함께 제1금융권 시중은행의 점포 수는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상호금융은 오히려 점포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 접근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제1금융권 4대 은행 점포 수 합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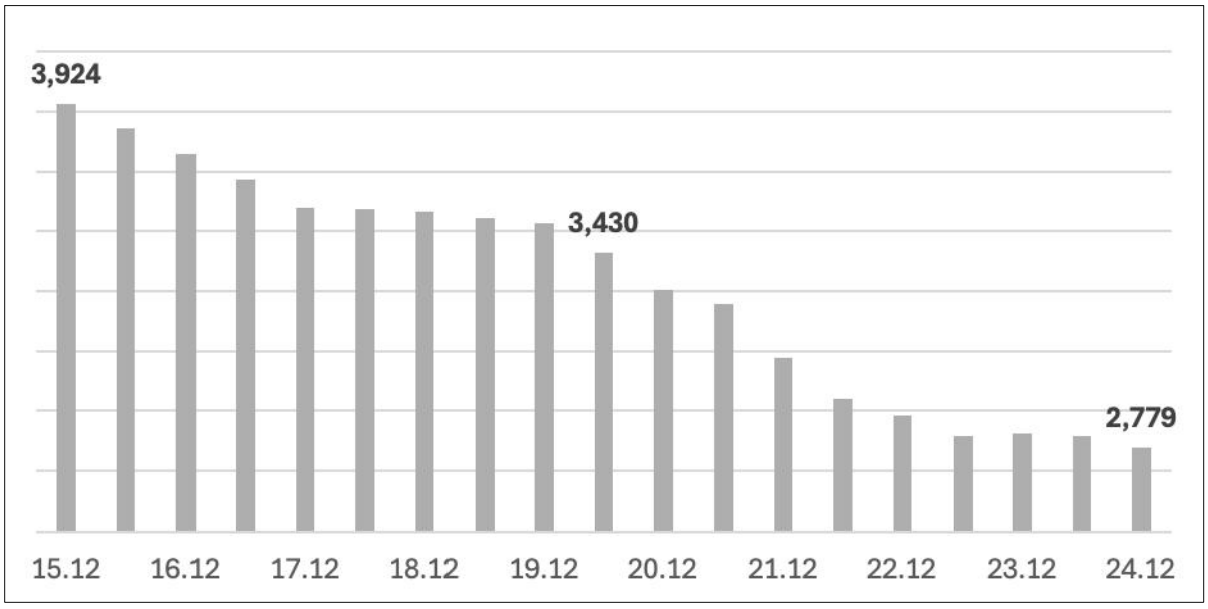

주: 제1금융권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합계를 의미함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상호금융 점포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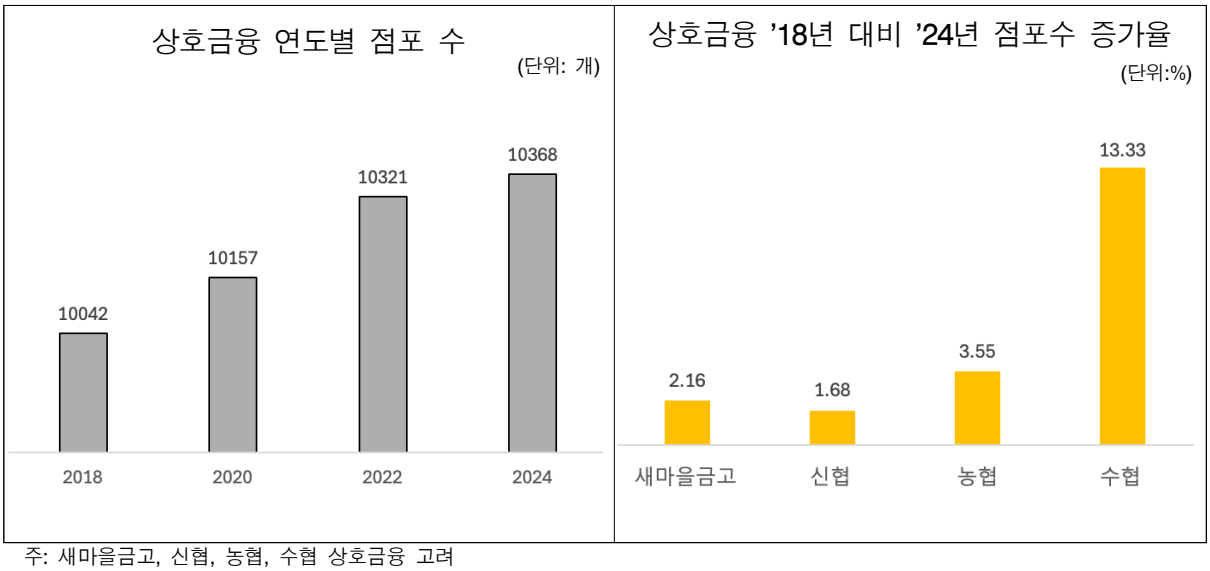

주: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상호금융 고려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관련 연구[12]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은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점포망을 통해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 및 수협 단위조합 등 지역 금융기관이 지역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에 기반한 관계금융을 실현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지역 경제의 자생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임.

셋째, 이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상호금융기관이 수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상호금융은 신탁, 퇴직연금, ISA 등 취급상품의 제한[13] 등으로 제1금융권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현실에서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가 종료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우량 조합원 등의 자금

12) 여효성·김봉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 -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은경(2018). “미국의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 『질서경제저널』, 21(1):65-92.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83p. 재인용

13) 상호금융(단위조합 기준) 취급상품 제한

구 분	취급 근거법률	제한 사유
신탁, 퇴직연금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인·허가 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조특법, 자본시장법	유사 신탁업자(은행, 증권회사 등)만 취급 허용
양도성예금증서	한국은행법, 금융위규정	한은법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미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은행법, 금융위 결정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만 가능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인·허가 사항
국공채 창구판매	국채법, 기재부규정	은행, 증권회사만 취급 허용
외국환	외국환거래법	환전 등 일부업무 제한적 취급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법	신용카드업자에 미포함
주택신용보증서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 미체결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은행법에 의한 제1금융권만 취급 허용

자료: 농협중앙회

이탈을 유발하여 상호금융의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원등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지고 조합원 등이 추가로 이탈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농·어·임업인과 저소득자에 대하여는 비과세혜택을 유지하되, 농·어·임업인이 아니면서 일정 이상의 소득자에 대하여는 비과세혜택을 종료하고, 예정대로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정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정부안은 농·어·임업인, 서민의 저축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비조합원, 고액소득자를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확보할 수 있음.

농·어·임업인, 영세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지역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준조합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거주자가 시중은행의 예·적금처럼 쉽게 조합원(회원)으로서 가입이 가능한 상황임.

[상호금융기관 가입 요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지역 농업인	지역 어업인	지역 임업인	지역거주자 등	지역거주자 등
준조합원	지역거주자 등	제한 없음	지역거주자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동 제도의 운용 결과는 초기 도입 취지와 달리 실질적 조합 등 활동과 무관한 일반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직장형 새마을 금고를 중심으로 대기업 고소득자들이 고배당, 고금리,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구성은 지역기반의 조합원보다 일반 금융소비자, 특히 준조합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14]으로 확인된다는 것임.

[농협 및 수협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중 준조합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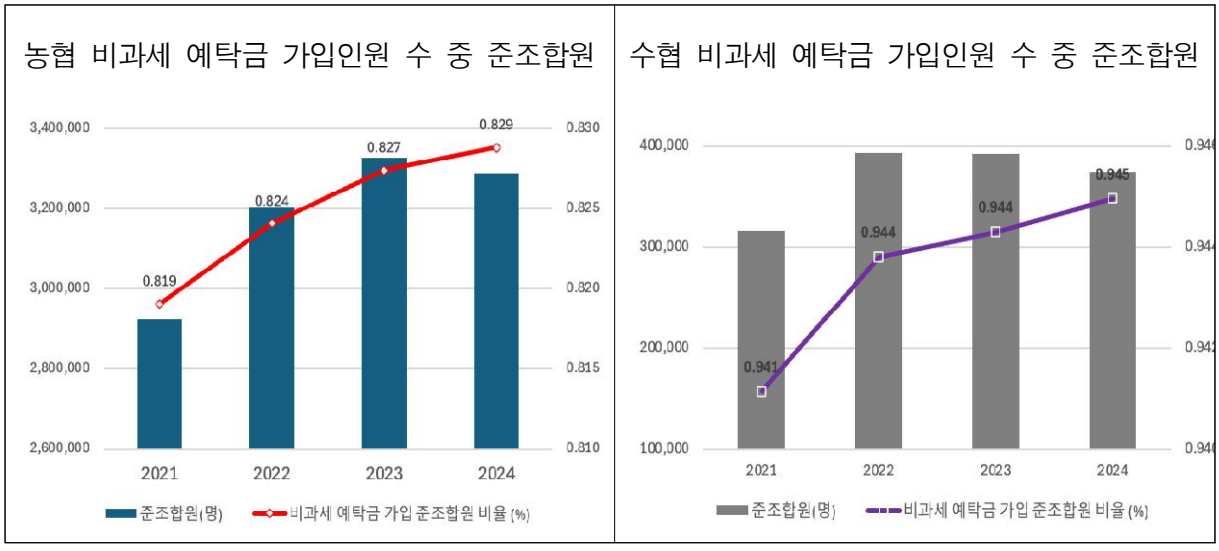

출처: 농협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분석 결과 1인당 평균 감면액은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구조로 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집중되

14) 조합원/준조합원 별 비과세 대상 예탁금 현황('24년말 기준, 출처 : 각 기관)
- 농협 : 조합원(11.6조원, 18.4%), 준조합원(51.4조원, 81.6%)
- 수협 : 조합원(1.0조원, 5.0%), 준조합원(19.0조원, 95.0%)

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이러한 사유로,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서는 ① 수혜 자격에 일정한 소득요건을 도입하거나 조합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실질적 필요계층에 한정한 지원하는 방안 혹은 ② 일몰계획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다만, 최근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및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상호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일부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실적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안의 비과세혜택 축소로 인한 자금이탈이 자칫 상호금융기관의 재무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호금융기관의 경영 개선 등을 통한 건전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상호금융권 손익 및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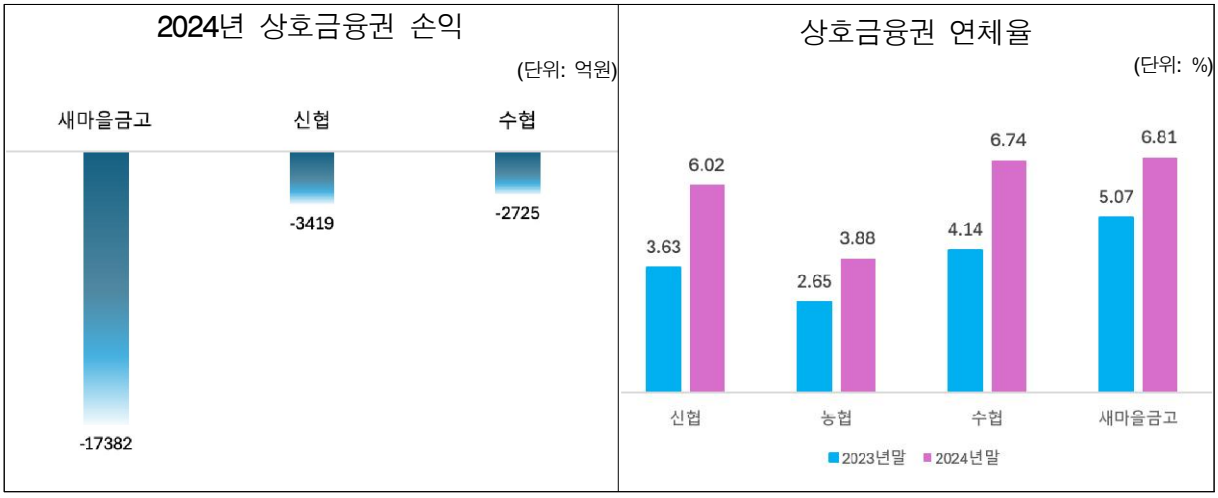

출처: 금융감독원 <2024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2024년 영업실적 발표>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문 의 처
02)6788-5161